

의안번호	2218243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계번호	26B205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600만원, 2031년 1,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조의2)	16	16	16	16	16	80	1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 결과는 향후 실제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이므로, 현재 고용노동부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	• 공식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전환·재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²⁾를 운영하고 있음

[표 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자료: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산업·일자리전환 지원센터	5,645	5,645 [5,638]	5,893	5,893 [5,784]	5,593	5,371 [5,187]	5,593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장래에 발생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다만, 국회는 2023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 고용정책심의회에 전문위원회³⁾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부대의견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동 전문위원회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이 때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정부는 동 전문위원회 신설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 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일자리전환지원 사업(코드: 6332-304)의 내역사업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이후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⁴⁾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본 추계서는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 근거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로 인해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폐지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⁵⁾
 - 2025년 기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수(30명) 대비 민간위원(20명)의 구성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회의 개최 횟수)**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 사례금)**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⁶⁾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6)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 개정안에 따라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600만원, 2031년 1,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3	13	13	13	13	—
회의 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 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소계(D=A×B×C, 백만원)	16	16	16	16	16	80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 결과는 향후 실제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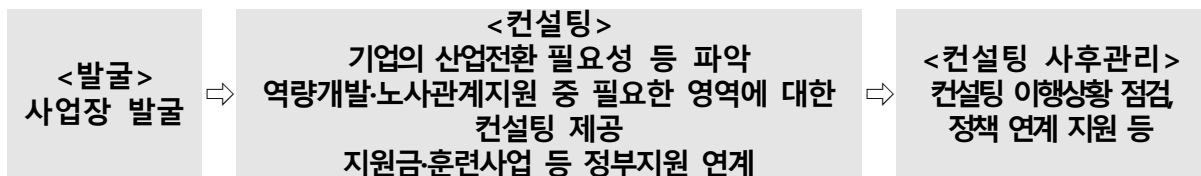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추진기업에 재직자의 직무전환·재배치 및 신규채용 방안,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 컨설팅 제공

□ 사업 내용

- (대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추진기업
 - (컨설팅)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 패키지(장려금, 교육, 훈련 등) 연계 컨설팅
 - (진단) 기업 현황(매출, 생산품 등), 인력 수요, 직무변동 분석 등을 통해 기업 상황 진단
 - (전문) 근로자 직무 전환·역량 강화 및 신규채용 방안 컨설팅
→ 정부 지원 사업* 연계
-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유급휴가훈련, 재직자 디지털 융합 훈련 등
-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이행 상황 점검, 애로사항 해결, 정부지원사업 신청 지원 등 모니터링 실시



- (수행기관) 공모 후 선정

* '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재)충남경제진흥원,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기간) 계속사업('22년~)